

6. 살처분 가축 등의 보상금 지급요령

1. 지급목적

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현지 시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긴급방역조치에 협력한 농가의 피해를 보전하는 데 있음

2. 지급대상

- 2.1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·주사·주사표시·약물목록·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 또는 사산이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
- 2.2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하여 살처분한 가축
- 2.3 오염이 의심되어 소독 또는 매몰한 배합사료, 조사료, 건초, 볏짚 등(이하 “오염물건”이라 함)

3. 지급요령

3.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및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·도태장려금지급요령(농림부고시)의 규정에 의한 평가금액을 지급하되, 신고지연 및/또는 방역규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최대 60%를 감액하여 지급

- 살처분 가축 : “보상금평가반”(이하 “평가반”이라 함)에서 축종별, 품종별로 제시한 금액
- 오염물건 : 평가반에서 제시한 금액. 다만 발생농장은 평가금액의 5분의 2를 지급

3.2 지급절차 : 평가반에서 보상금 평가서를 발급 → 살처분 가축의 소유자가 관할 시·군에 보상금 신청 → 시·도에 진달 → 보상금 지급

4. 평가반 구성 : 반장 포함 5명 이내

4.1 반장 : 살처분 농장 관할 시·군·구 축산담당과장

4.2 반원

- 시·군·구의 가축방역업무 담당계장 1명
- 시·도 가축방역기관 소속 가축방역관 1명
- 지역축협 또는 업종조합에 근무하는 자로서 가축 거래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1명
- 공수의 또는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 1명

5. 보상금 평가액의 상한선

5.1 평가반은 평가 당시 살처분한 가축이 사육된 지역(시·군·구)의 산지 거래가격, 도매시장 경락가격 등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액으로 상한가격을 결정하여야 함

5.2 평가반은 축종별·품종별로 사슴, 염소 등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시장가격의 등락폭이 커 조사가 어려운 가축의 평가액 상한선은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결정함

5.2.1 종 축

- 종축의 인정 : 종축개량기관에 등록된 종축 또는 종축관련 생산자단체가 제시한 자료에 의거 위원회가 종축으로 인정하는 것
- 종축의 가격 : 한국종축개량협회 등 종축관련 생산자단체에서 제시한 금액 또는 당해 종축 구입시 거래한 영수증 등에 기재된 가격

5.2.2 젖소 고능력우

- 고능력우 인정 : 전년도 전국 연평균 마리당 산유량에 비해 12% 이상을 초과하여 산유하는 젖소
- 평균 산유량 확인 : 평가대상 젖소 사육농장에서 원유를 집유한 유업체가 최근 1개월간 지급한 원유대금의 평균
- 고능력우 가격 : 일반 젖소가격(축협조사월보) + (평균산유량 초과유대의 순수익금 × 이용잔여년수)

5.2.3 멧돼지 : 당해 가축의 구입당시 거래 영수증 등의 기재금액

5.2.4 사슴 : “사슴 수매지침”에 명시된 품종별, 암·수별 평가금액을 참조

5.2.5 염소(중탕용 암·수 구분없이 10kg이상) : 거래영수증 등의 기재금액

5.2.6 오염물건 : 당해 물건의 구입당시 거래 영수증 등의 기재금액

6. 보상금의 결정 등

6.1 반장은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·감독

7. 지급방법 등

7.1 농가는 관할 시·군·구청에 “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·장려금지급요령(농림부 고시)”의 보상금지급신청서 제출

- 보상금 입금통장 첨부

7.2 시·군·구청장은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

- 살처분명령서 사본

- 소각·매몰 확인서

- 보상금 평가서 사본

7.3 오염물건의 현지시가 보상차액의 현물지급절차

- 지급대상 농가는 재입식후 관할 시·도(군)에 현물 공급신청

- 시·도(군)는 6.2의 현물 지원금액에 의한 당해 물건을 농가에게 공급한 후 농협중앙회(축산발전기금사무국)에 축산발전기금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

· 교부금 결정 통보시 농가에게 사료 등 물건을 공급한 자의 은행 계좌번호 기재

- 농협중앙회는 시도의 보조금 교부결정에 의거 보조금 지급

7.4 기타 보상금의 지급신청·보상금의지급방법 등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“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·장려금지급요령(농림부 고시)”에 의함